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제4-1조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보험회사의 외국환계정 처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국외점포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보험회사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I. 자산계정

-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자회사 등 투자지분)
-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 (기타 금융자산)
- (비금융자산)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 (특별계정자산)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 가. 외화타점예치금
- 나. 외화정기예치금
- 다.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 가. 외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나.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나.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다.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증권

5.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라. 기 타

6. 외화사모사채

7.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8. 국외고정자산

9.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보험계약자산

나. 외화재보험계약자산

다. 외화미수금

라. 외화미수수익

마. 외화가지급금

바. 외화선급비용

사.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아. 기 타

10.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 (1) 주식선도
- (2) 주식관련스왑
-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 (1) 신용파생상품스왑
-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12.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13. 외화대손충당금(-)

II. 부채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특별계정부채)

1. 외화콜머니

2.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은행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3.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4. 외화리스부채

- 5.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6. 외화본지점
 - 가. 국내본지점
 - 나. 국외본지점
 - (1) 갑계정
 - (2) 을계정
- 7. 외화책임준비금
- 8. 기타외화부채
 - 가. 외화미지급금
 - 나. 외화가수금
 - (1) 외화가수보험료
 - (2) 기타
 - 다. 외화선수수익
 - 라. 외화미지급비용
 -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 (금융지급보증)
 - 사. 기 타
- 9. 외화파생상품부채
 - 가. 이자율관련
 - (1) 이자율선도
 - (2) 이자율스왑
 - (3) 매도이자율옵션
 - 나. 통화관련
 - (1) 매도통화옵션
 - 다. 주식관련
 - (1) 주식선도
 - (2) 주식관련스왑
 - (3) 매도주식관련옵션
 - 라. 신용관련
 - (1) 신용파생상품스왑
 -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 (3) 기 타

마. 기타과생상품부채

10.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자회사

나.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자회사

나. 기타외화지급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과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과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과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과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과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과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과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과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보험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보험회사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을 준용한다. 다만,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업고유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